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276호
- 나.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14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9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울시 관광산업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관광기념품 개발 ·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평가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와 통지, 지정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에서 제15조)
- 관광기념품 사후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사무의 위탁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정의 필요성

- 서울시는 현재 「관광진흥법」 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를 근거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광기념품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0개의 시·도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타 시·도 제정현황>

번호	자치단체명	자치법규명
1	경기도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2	경상남도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3	경상북도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7	전라남도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8	전라북도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10	충청남도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다. 조문별 검토

1) 용어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2)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 제정안은 관광기념품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위원회 구성의 남설을 방지하기위해 비상설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과 같이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위촉위원을 ‘공예품 또는 농·수·축 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규정할 경우,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없으며, 공예품도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공예박물관 소관으로 더 적합해 보이므로 조례의 소관부서인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종 위원회 설치의 경우 제정안처럼 위원회의 목적·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외에도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등

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p>제5조(구성 등) ①~③ (생략)</p> <p>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서울시의회 의원</p> <p>2. <u>공예품 또는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u></p> <p>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p> <p>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p> <p>⑤ (생략)</p>	<p>제5조(구성 등) ①~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 ----- -----.</p> <p>1. -----</p> <p>2. <u>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u></p> <p>3. -----</p> <p>4. ----- -----</p> <p>⑤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수당 등) (생략)</p> <p><신설></p>	<p>제8조(수당 등)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3) 경진대회 등 개최와 입상자 지원(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안 제9조는 시장이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 해마다 공모전을 개최하여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관광기념품 또는 디저트 등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마케팅 사업과 서울시가 개최·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주요 인사 및 관계자 기념품이나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 방문 및 초청 외빈 기념품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안 제2조) ‘관광기념품’은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0조는 경진대회 입상자를 전국단위 경진대회 입상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 유지 차원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u>서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u>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 <u>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u> ----- ----- ----- ----- ----- 1.~4. (제정안과 같음)

4)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관련(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제정안은 관광기념품 개발·제작·판매업체 중 개발과 제작기술,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는 이러한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 지정업체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위해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기관과 평가반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용에 있어 집행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관광기념품 업체 육성과 마케팅 활동 등 지원(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

- 안 제19조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의 지원 또는 용자 알선▶포장 디자인과 브랜드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0조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관광기념품 업체와 관광기념품 마케팅에 대한 이러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안 제21조(사무의 위탁)을 근거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 수행할 것으로 보임.

관광기념품 사업의 개발과 육성을 통해 서울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공감하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붙임 1

집행부 검토의견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기덕 의원	2023.1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안 이유> ○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울시 관광산업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 요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 시장의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관해 규정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평가기관, 육성 및 지원 규정 등				
추진경과	○ 2023. 10. 5. 김기덕 의원 면담 ○ 2023. 10. 9.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원 발의				
부검토의 서건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울 관광산업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 본 조례 제정안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사무위탁 관련 조항이 제9조, 제18조, 제21조에 중복되고 있어 제9조 제4항, 제18조 2항은 삭제하고, 제21조에서 사무위탁 관련 근거를 포괄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기관,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대응방안	○ 검토 의견(수정가결) 처리 협조('23.10월 셋째주)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 후 계 획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팀장	조수진(☎2133-2772)	담당	김종욱(☎2133-2775)